



# 1999년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농 립 부

농림부는 “1999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전국 수의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은 금년중,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및 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 검진사업, 질병진단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본회 학술홍보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추진하여야 할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하고자 한다.

본 편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농림부 축산국 축산위생과에 문의하시거나, 본회 학술홍보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 편집자 주 -

### I. 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경제적 피해 방지
- 인수공통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혈청검사·검진사업 확대실시로 국민보건 향상

### II. 추진방향

-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 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한 예방주사 및 검진물량 대폭 확대실시
- 지역별·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
  - ◇ 지역축협, 양축농가단체, 계열주체농가, 전기업 양축농가, 공·개업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역방역센터로 육성·지원
  - ◇ 가축방역 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의식교육 강화
  - ◇ 병성감정 전문인력 양성 및 정밀검사장비 지원 확대
  - ◇ 기동방역진료차량 지원으로 현지 긴급방역 조치등 초동방역 실시

- 도축장의 방역관리 강화 및 혈청검사 확대실시
  - ◇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로 발생농장 추적조사 및 신속한 방역 조치
  - ◇ 가축수송차량 소독시설과 닭 수송용기를 지원하고 도축장 소독 실시 의무화로 농장간 전염병 전파방지

- 종돈장, 종계장 위생관리 강화
  - ◇ 위생·방역관리우수농장등급인증제 시행으로 종축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근원적 차단

- 가축질병예찰업무 강화로 선진 방역대책 추진
  - ◇ 관내 공수의,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적극 활용한 예찰업무 활성화
  - ◇ 양축농가에 적기 예방실시 홍보 강화
- 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지정 및 진단액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질병진단 편의 도모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신규개발 보급 및 품질 개선으로 가축질병 피해예방 효과 거양

### Ⅲ.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비용의 부담) 및 제34조(보상금)
  - ◇ 주사, 검사, 투약, 소독실시 소요비용 : 국비 50% 이상 부담
  - ◇ 살처분보상금 : 국비 100%
  - ◇ 가축위생시험소 시설, 장비 보조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수의사법 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 ◇ 수당과 여비를 지급

## IV. 사업개요

### ① 가축방역사업 총괄

(단위 : 천원)

예산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 방 비	기 금
201	가축방역대책수당	10명	1,000	1,000		
	진단액·긴급방역비	-	1,449,000	1,449,000		
301	보상금(살처분·도태)	202천두	2,900,000	2,900,000		
304	수의사연수교육	400명	40,000	40,000		
305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방주사	323,831.18천두	7,958,629	5,237,649	2,720,980	
	- 검진	685.34천두	727,870	408,412	319,458	
	- 기생충구제	2,412천두	1,769,400	1,208,580	560,820	
	- 가축혈청검사사업	301.92천두	260,990	239,990	21,000	
	- 오제스키병근절사업	294천두	558,600	499,800	58,800	
	- 유방염방제사업	62.46천두	156,150	156,150		
	- 공수의수당	252명	1,520,640	760,320	760,320	
	- 본부유보		949,419	949,419		
기금	공동방역사업단지원	50개소	1,750,000			1,750,000
	도축장 소독시설	30개소	3,040,000			3,040,000
	가축방역교육	5,000명	59,000			59,000
	<b>가축방역·합계</b>	<b>326,783</b>	<b>23,140,698</b>	<b>13,850,320</b>	<b>4,441,378</b>	<b>4,849,000</b>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기동방역차량	19대	285,000	142,500	142,500	
	- 소독시설	23기	690,000	345,000	345,000	
	<b>소 계</b>	<b>42(대·기)</b>	<b>975,000</b>	<b>487,500</b>	<b>487,500</b>	
<b>합 계</b>		<b>326,783</b>	<b>24,108,698</b>	<b>14,337,820</b>	<b>4,928,878</b>	<b>4,849,000</b>



## 2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 1 목적

■ **예방주사** : 주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

■ **검진** : 우결핵, 부루세라 등 만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 양성축을 살처분 또는 도태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유도

■ **구제** : 가축에 기생하는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2 사업집행기관 : 시·도지사

3 사업시행기관

■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 : 시장·군수

■ **검진·혈청검사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장 포함)

### 4 사업시행절차

#### ■ 예방주사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 등을 직접 계약 구입한 후 시·군별로 공급 또는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시·군에서 계약 공급

◇ 예방약 종류 및 세부내역

- 종류 : 11종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오제스키병, 광견병, 뉴캐슬병, 진도견 디스토퍼등(DHPPL)

◇ 예방약 선정 및 공급업체(소)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확정

- 협의회 위원 : 공동방역사업단장, 생산자단체장, 농가 대표 등

- 예방약은 공동 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지역은

공동방역사업단이 희망하는 제품, 미설치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함.

◇ 예방약 지원 우선순위

- 돼지콜레라

1 공동방역사업단(참여농가)→ 2 방역관리우수농가→ 3 1,000두미만 사육농가→ 4 기타 (영세 부업농가 등)

- 뉴캐슬병

1 공동방역사업단 관할 부화장→ 2 계열주체 부화장→ 3 기타

- 기타 : 해당 축종을 우선으로

1 공동방역사업단 2 공수의 3 기타

◇ 예방약 공급방법

- 일괄 다량 공급방식을 지양하여 공동방역사업단 또는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예방약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예방약 공급 및 접종 확인

- 선정된 예방약 공급업소는 예방약 판매대장 등 증빙서류 보관

- 공동방역사업단 등은 농가별 예방약 공급대장 기재 보관

- 시·도(군)는 공동방역사업단, 예방약 공급업소, 농가 등에 대하여 예방약 판매·공급·접종 여부를 수시 확인

#### ■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전염병별 검사 실시(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접종등)

#### ■ 구제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에 의거 가능한 구제약품을 일괄 구입한 후 시군별로 대상농가에 지원

### 5 사업비 집행

■ 농림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매월

사업비를 시도에 재배정

■ 시도별 특성에 알맞는 방역실시를 위하여 방역사업비 증가시 지방비 부담

⑥ 사업실적 보고

■ 보고기한 : 2000. 1. 15까지

■ 보고서식 : 가축방역사업 실적보고에 의함

③ 가축혈청검사사업

①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 질병감염 여부 및 질병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 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② 사업시행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진단액등 생산 및 기술지도

■ 시·도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진단액을 공급하여 혈청검사 실시 및 양축 농가 지도

③ 검사대상 질병 : 20종

■ 닭 : 뉴캐슬병(ND), 산란저하증(EDS' 76), 감보로병(IBD), 전염성기관지염(IB), 마이코플라즈마(MG) - 5종

■ 돼지 : 단독(SE), 위축성비염(AR), 일본뇌염(JE), 마이코플라즈마병(MP), 돼지파보(SP),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콜레라(HC),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Rota) - 10종

■ 소 : 유행열(EF), 아까바네병(AD), 이바라끼병(ID), 추산병(CD), 아이노바이러스 감염증 - 5종

④ 실시방법

■ 닭 혈청검사

◇ 검사대상 선정

- 검사를 요청한 양계농가를 우선하고, 종계장에서 직접 채혈하거나 당해 종계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 채취 : 매월 균분 실시

■ 돼지 혈청검사

◇ 검사대상 선정

- 혈청검사를 요청한 양돈농가를 우선 실시

- 종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하여 제주도내 각 지역별로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농가당 20두)를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

◇ 가검물채취 : 매월 균분 실시

■ 소 혈청 검사

◇ 모기매개질병(유행열, 아까바네병, 이바라끼병, 추산병,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99. 3월말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바이러스과)에 송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유행열 등 5종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하여 동질병의 국내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99. 4. 30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요네병 및 네오스프라 감염증에 대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와



함께 전국의 젖소를 대상으로 항체가를 검사하여 국내분포조사를 실시한 후 '99. 6. 30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⑤ 사업량**

： 299,920두수(검사건수 : 562,000건)

■ 닭 : 58,000수

◇ ND, EDS, IBD, IB, MG

： 48,000수(240,000건 : 48,000수×5종)

◇ A1 : 10,000수(10,000건)

■ 돼지 : 239,000두

◇ SE, AR, JE, SP, MP

： 9,800두(49,000건=9,800두×5종)

◇ PRRS 21,500두(21,500건)

◇ HC 198,000두(200,000건)

(제주도 HC 청정화사업 6,000두 포함)

◇ TGE, PED, Rota 9,800두(29,400건=9,800두)

■ 소 : 2,820건

◇ 유행열, 아까바네병, 이바라끼병, 추산병,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등, 모기 매개질병 2,820두(14,100건=2,820두×5종)

**⑥ 실시재료비 : 총 260,990천원**

： 국비(239,990), 지방비(21,000)

■ 소 : 1,410천원

◇ 모기매개질병(5종)검사재료비

： 1,410천원 =2,820건×500원/5종

■ 돼지 : 139,580천원

◇ SE, AD, JE, SP, MP, TGE, PED, Rota 실시재료비 : 54,880천원=78,400건×700원

◇ PRRS 실시재료비 : 4,300천원=21,500건×200원(검역원 제외)

◇ 제주도 HC 항원·항체검사 재료비 : 42,000

천원=6,000건×7000원 (지방비 : 21,000천원 포함)

◇ 돼지콜레라(제주도 제외) 혈청검사 재료비 : 38,400천원=192천건×200원

■ 닭 : 120,000천원

◇ ND, IB, EDS, IBD, MG 실시재료비 : 48,000천원=48,000×5종×200원

◇ ND, IB, EDS 진단액 구입비 : 72,000천원=48,000건×3종×500원

※ ND, IB, EDS 진단액은 '99. 5월까지 각 시도에서 구입

**⑦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 백신접종 적기여부, 접종방법의 개선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특히 돼지콜레라 항체검사에서 음성인 농장에 대하여는 백신접종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및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할 것

■ 도축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결과는 출하농장이 타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해당 시도는 방역관리 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할 것.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돼지콜레라의 경우 음성 농가는 반드시 과태료 처분 및 예방접종 지도

**⑧ 기타**

■ 우수 종돈·종계장 인증을 위한 혈청검사

◇ 각 시·도지사는 우수 종돈·종계장 신청을

받으면 검사에 필요한 진단액을 미리 농림부에 요구하여 배정을 받을 것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진단기술 배양 및 전문화를 유도할 것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긴급방역, 병성감정 또는 모니터링사업 등에 필요한 가금인플루엔자, 돼지설사병 등의 항원을 생산하고 당부에 보고할 것

⑨ 보고

▣ '99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축산사업 보고 별첨서식 2" 제1번에 의거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월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4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① 검진사업

▣ 목적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오제스키병 감염축을 색출·도태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오제스키병 발생상황 조사와 출하농장 추적조사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함

▣ 사업실시기관

- ◇ 검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포함)
  - 오제스키병 감염진단키트 및 간이진단키트를 시도별로 구입하여 검사기관에 배정
- ◇ 기술지도기관 : 수의과학검역원

▣ 검사대상

◇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과 검사 필요

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 사육농장이 확인될 수 있는 돼지

▣ 실시방법

- ◇ 종돈장 :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별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여 년2회 검사 실시 (상반기 : 5~6월, 하반기 : 9~10월)
- ◇ 허가·등록된 양돈장등 : 년 2회 검사 실시
- ◇ 도축장 출하돼지 : 농장별 20두 기준으로 검사 실시

▣ 사업물량 : 294,000두

- ◇ 시·도별 사업물량은 별표 참조
- ◇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사육실태 및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종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 검사결과 조치

- ◇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한 검사실시결과 양성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즉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규정된 긴급방역 조치를 할 것.
- ◇ 발생농장 인근지역과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질병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할 것.
-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검사는 매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돼지는 출하농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인·선정토록 할 것이며, 각 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99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99가축방역실적 보고 서식" 제2번에 의거 집계보고하고, 양성축 검색시에는 추적조사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이며,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 종돈장과 양돈장 검사실시 결과는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99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99(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서식" 제3번에 의거 보고할 것이며, 양성축 판정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

■ 기타

◇ 시도지사는 도축검사신청서(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에 돼지 출하농장의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축업무와 연계하여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유방염 방제사업

① 목적

■ 유대지급 차등가격제(세균 및 체세포수)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유방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으로 각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우유 생산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② 실시기간 : '99. 1 ~ 12월

③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④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총복
사업량	0.5	0.5	0.5	0.96	16	6	5
사업비	1,250	1,250	1,250	2,400	40,000	15,000	12,500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업량	8	5	5	9	5	1	62.46
사업비	20,000	12,500	12,500	22,500	12,500	25,000	156,15

※ 실시재료비(CMT 시약등) : 두당 2,500원

⑤ 대상농가 : 집유장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3급

(50만 초과/ml당) 판정농가 우선실시 하고, 검사 의뢰분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실시

■ 시도지사는 체세포수 3급 농가를 파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별로 사업물량 조정

⑥ 세부 실시요령

■ 체세포수 3급판정 농가의 착유우에 대한 개체별, 분방별로 CMT 및 체세포수 검사실시

◇ 체세포수 50만개/ml 이상을 유방염 감염 의심우로 판정

■ 개체별 검사결과 유방염 의심우에 대해 분방별로 원인균 분리

■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시험 실시

■ 유방염 감염우, 감염분방, 원인균 및 약제시험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자가 치료토록 지도

⑦ 기타

■ 시도지사는 분기실적을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98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축산사업보고 별첨서식 2" 제4번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할 것.

⑥ 살처분 보상금등 지급

① 목적

■ 가축전염병(우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 추백리등)에 이환된 양성축을 조기색출, 살처분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

■ 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방지

■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축산의욕 고취

② 지급계획물량 : 201,530두·수

■ 살처분보상금

◇ 소 : 530두(젖소 200두, 한육우 230두)

◇ 돼지 : 16,000두

◇ 닭 : 185천수

■ 도태장려금

◇ 돼지 : 756두

◇ 소 : 170두

③ 재원 : 2,900백만원(국비)

④ 사업주관 : 농림부 및 시·도

⑤ 지급대상

■ 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관의 명령에 의하여 살처분 된 소, 돼지 및 닭에 한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급

■ 소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동거가축 및 돼지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양성으로 확인된 모돈의 조기도축 출하시 도태장려금 지급

⑥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농림부 고시 제97-31호에 의거 지급

⑦ 기타

■ 살처분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건비, 소독비, 소각로 운영비, 매몰비 등을 필히 지방비로 확보할 것

■ 평가액 산정은 평가인이 상호비밀 유지하여 평가하고 당부에서 정한 평가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㉞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① 목적

■ 새로운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방지

■ 신속한 질병감정 및 원인분석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지원

■ 전염병 발생시 기동방역진료차량을 이용, 신속한 현지 기동방역 실시

② 사업량 및 사업비

■ 기동방역 진료차량 구입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경기	4 대	30,000	30,000	60,000	* 기동방역차량에는 다음과 같이 차량 색상 및 표시를 통일하여 일반 업무차량과 구분하도록 조치  "긴급 가축 방역" ○○도
강원	2	15,000	15,000	30,000	
충북	2	15,000	15,000	30,000	
충남	3	22,500	22,500	45,000	
전북	2	15,000	15,000	30,000	
경북	3	22,500	22,500	45,000	
경남	2	15,000	15,000	30,000	
제주	1	7,500	7,500	15,000	
계	19	142,500	142,500	285,000	





▣ 가축위생시험소 출입차량 소독시설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경기	3	45,000	45,000	90,000	
강원	3	45,000	45,000	90,000	
충북	3	45,000	45,000	90,000	
충남	3	45,000	45,000	90,000	
전북	3	45,000	45,000	90,000	
전남	1	15,000	15,000	30,000	
경북	3	45,000	45,000	90,000	
경남	3	45,000	45,000	90,000	
제주	1	15,000	15,000	30,000	
계	23	34,500	34,500	690,000	

③ 사업시행자 : 가축위생시험소장

④ 사업감독 및 사후감독 : 해당 도지사

⑤ 구입완료시기 : 기동방역진료차량은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99상반기 중에 구입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강원, 전남도에서는 전 가축위생시험소에 출입차량 소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추경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의 위촉

① 목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 검진 및 예찰등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 보호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② 시도별 국비 공수의 정원

국비 공수의 감축조정에 따라 공수의가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실시토록 할 것.

구분	계	일반지역	특별지역
계	252	247	5
대구	1	1	-
인천	4	3	1
광주	1	1	-
경기	29	29	-
강원	24	24	-
충북	20	20	-
전북	27	27	-
전남	36	33	3
경북	39	38	1
경남	34	34	1
제주	5	5	-

③ 배치기준 및 월수당

구 분	배 치 기 준	월 수 당		
		계	국 비	지방비
일반지역	읍·면 소재지이상	천원 490	245	245
특별지역	도서 및 특수오지	1,138	569	569

※ 지방비 소요예산을 확보한 시도에서는 위 기준에 불구 수당증액 지급 가능

④ 시도별 공수의 수당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계	152,640	760,320	760,320	
대구	5,880	2,940	2,940	
인천	31,296	15,648	15,648	
광주	5,880	2,940	2,940	
울산	11,760	5,880	5,880	
경기	170,520	85,260	85,260	
강원	141,120	70,560	70,560	
충북	117,600	58,800	58,800	
충남	188,160	94,080	94,080	
전북	158,760	79,380	79,380	
전남	235,008	117,504	117,504	
경북	237,096	118,548	118,548	
경남	188,160	94,080	94,080	
제주	29,400	14,700	14,700	

⑤ 공수의 위촉 및 배치기준

▣ 공수의 자격요건

◇ 예방주사, 순회진료, 질병예찰업무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65세미만의 공동방역사업단이 개설한 동물병원 소속의 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

▣ 위촉 우선순위

- ◇ 공동방역사업단이 개설한 동물병원 소속의 수의사
- ◇ 관내양축가로부터 신뢰도가 높고, 진료·방역업무에 적극인 개업 수의사
- 해당 지역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추천서 첨부

◇ 기타 위촉권자가 정한 자체 기준에 적합한 개업 수의사

▣ 공수의 배치 우선순위

◇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지역은 공동방역사업단에 우선 배치

◇ 기타 지역은 가축 사육두수 및 정부지원 예방주사 실시물량 기준으로 배치

▣ 공수의 운영

- ◇ 시·군은 공수의별 담당농가 책임제를 지정 운영 (100농가 이내)
- ◇ 시·군은 공수의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



록 세부계획을 수립 지도할 것

- 주요업무 : 예방약 공급, 접종, 접종여부 지도 점검, 질병예찰, 검진, 전염병발생시 긴급방역 조치 협조 등

◇ 기타 세부사항은 수의사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 공수의 평가 및 해촉

◇ 평가 : 반기별 1회이상 공수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  
- 업무 평가 : 시도, 시군, 관한 가축위생시험소 (지역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해당 사업단 참여)

- 각 시·도에서는 관내지역 순회진료 및 방역사업 적극 참여도, 업무평가 결과와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의 추천의견 등을 종합하여 차년도 공수의 위촉시 반영

- 위촉기간중 공수의업무 참여실적이 미흡할 경우 즉시 해촉

⑥ 업무감독 : 공수의 준수사항(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한 지휘·감독

■ 시·군은 해당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의견 반영

⑦ 행정사항

■ 공수의 지정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 (해촉과 동시 위촉할 것)

■ 매월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수의 업무 보고사항을 취합하여 익년도 1.30일까지 보고

⑧ 기타사항

■ 공수의의 추가 위촉·활용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소요 지방비 확보예산범위내에서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운영

■ 공수의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로 하여금 예방접종시 가

축보정, 공수의와 축주 합동 실시사항 협조 희망

■ 지역별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공수의가 해당 사업단 소속 방역요원을 지휘·감독하에 예방주사 실시

㉠ 수의사연수교육

① 추진방향

■ 선진 수의기술 보급으로 수의사의 자질향상 및 수의업무 발전도모

■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료기술 습득으로 축산소득 증대 기여

② 사업내용

■ 사업주체 : 대한수의사회

■ 사업비 : 40,000천원(국비)

■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9 수의사연수교육 세부추진계획을 '98. 10.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수의사 보수교육

◇ 교육내용 :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이론 및 실교육

◇ 교육기간 : 1일×13회

◇ 교육인원 : 2,000명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또는 일반 수의사로서 희망자

수의사 임상강습회

◇ 교육내용 : 가축위생정책 및 임상교육

◇ 교육기간 : 1일×2회

◇ 교육인원 : 500명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행정·연구 및 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③ 안내기관

: 대한수의사회 (0342-702-8686)